

9 지원 내용



가. 양육보조금

⑤ 지원내용 :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0천원~560천원 이상 차등지원(지방이양) 권고

연령	지원액
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	월 340천원 이상
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	월 450천원 이상
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 * 연장보호아동 포함	월 560천원 이상

*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
⑤ 지급방법 : 위탁가정 소재지 시·군·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

* 학업 등 이유로 주소지 분리된 경우 포함

* 다만,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일과 아동 배치일 간 차이가 있는 경우, 아동 배치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

-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·군·구와 위탁가정 소재 시·군·구가 다른 경우 가정위탁보호 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(책정)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 시·군·구에서 수행

* 위탁아동은 위탁가정 소재 시·군·구로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 시·군·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

⑤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⑤ 지급 중지 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하며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

[예시]

지급 중지 사유	지급 중지 기간
교정시설 입소(22.9.10~23.10.20.)	22.10.~23.9
국외 체류(23.11.3~24.6.15.)	24.3.~24.5
군입대(23.1.23~24.7.22)	23.2.~24.6

*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교정시설 등 입소, 해외 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 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. 이 경우 과잉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하되,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

*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시점: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익월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의 전일까지

* 양육상황점검 등을 통해 해외 체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통산,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이 초과된 경우 90일이 포함된 달의 익월부터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

- * 행복e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에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처리 시 중지사유 필수 입력
- * 지급 중지 사유 소멸로 양육보조금 지급이 재개될 경우, 행복e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에서 재결정처리 시 '최초 결정일자' 시스템 입력(가정위탁보호확인서 결정일자는 최초결정일자 기준으로 발급)

➤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

-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: 신거주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급
-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: 구거주지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급

➤ 지급계좌 : 1세대 1계좌 원칙

-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. 다만,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(재개설 포함)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 가능

나. 전문아동보호비

➤ 지원대상 : 전문위탁부모

- ※ 단, 지자체 예산 문제로 전문아동보호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정위탁 책정을 먼저 진행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지원. 지자체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수
- ※ 다만 입양 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입양대상아동인 경우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우선 지급(전문아동보호비와 중복지급 불가능)
- ※ 입양 전 가정위탁에서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변경되어 입양대상아동보호 지급이 종료된 경우,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절차 신속한 이행 필요
- ※ 보호출산아동으로 신생아를 일시보호하고 있는 경우, 전문아동보호비가 아닌 신생아 긴급 보호비(최대 3개월, 월 100만원) 우선 지원

➤ 지원내용 :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

➤ 지급방법 : 위탁가정 소재지 시·군·구에서 전문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, 종결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

- 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은 결정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100% 지급, 16일 이후일 경우 50% 지급
- 위탁보호 종료일이 포함된 달은 종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문아동보호비 50% 지급, 16일 이후일 경우 100% 지급
- ※ 동일 가정 위탁 유형 변경(일반가정위탁↔전문가정위탁)으로 사후·서면심의 한 경우, 유형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급

➤ 지급계좌 및 지급일 : 전문위탁부모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(토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